

○광고물 관리규정

(별첨 4)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춘의테크노파크 1의 입주자 업무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입주자의 상호간판 및 영업안내 간판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설치, 유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관 저해방지와 건물의 품위를 유지하고 위험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옥외 광고물 관리법 및 춘의테크노파크 관리규약 및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다.

제 3 조 (분류 및 정의)

간판의 분류와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면간판 : B1층, 1층 근린생활시설의 전면 즉 간판을 부착할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한 간판을 말한다.
2. 돌출간판 : 건물의 모서리 또는 건물의 경계벽에 돌출시켜 부착하는 간판을 말한다.
3. 입간판 : 이동 가능한 간판을 말한다.
4. 지주이용간판 : 독립적으로 제작된 지주에 매달거나 부착시켜 게시한 간판을 말한다.
5. 플랭카드 : 천,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여 지주나 일정한 게시시설에 양끝을 가로 또는 세로로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6. 애드벌룬 :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 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이나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을 말한다.
7. 벽보 :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 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 게시판 또는 지정 벽보판에 부착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8. 전단 :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 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9. 스티커
10. 입주자 INFORMATION : 건물 1층 현관에 각 입주자의 상호 안내간판을 말한다.
11. 층 안내간판 : 각 층 승강기앞 승강장의 벽면에 부착한 층별 INFORMATION을 말한다.

제 4 조 (승인 또는 신고)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설치 할 수 있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1. 승인 광고물
 - 돌출간판 (건물외벽 및 화단 등에 설치하는 옥외광고물등 포함)
 - 입간판
 - 현수막
 - 플랭카드
 - 애드벌룬
2. 신고 광고물

- 회사입구에 부착하는 상호간판
- 층안내간판의 상호간판/ INFORMATION상호간판
- 전단
- 벽보
- 스티커
- 기타 홍보 및 안내. 판촉활동 등

제 5 조 (승인 및 신고절차)

1.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사무소의 사전동의를 득한후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관계법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광고물의 도면 또는 사진 1매
 - 광고물 게시 요청 점포의 좌우에 위치한 사업자의 동의서
 - 제 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광고물은 안전도 검사 결과서 첨부
2. 관리사무소에는 광고물의 승인을 할 때에는 승인 교부대장을 비치하여 승인번호를 부여한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제4조 1의 1번 및 5번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위원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 6 조 (광고물 표시 금지)

광고물 부착금지 장소는 아래와 같다

1. 도로표식, 안전표식 및 주차표식, 신호기
2. 가로수
3. 기념비 및 시설
4. 우편함, 소화전, 화재 경보기
5. 담 장
6. 지정장소 이외의 벽면 및 화장실 벽 등

제 7 조 (광고물의 표시 제한)

본 건물내에서 광고물의 표시를 제한하는 구역은 다음과 같다.

1. 다수가 사용하는 공용의 벽면 공간
2. 입구의 셔터 및 각종 문
3. 기타 공용 부분

제 8 조 (광고물규격 등)

1. 본 건물에 설치하는 광고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과 규격은 다음과 같다.

- 돌출간판 : 설치할 수 없다.
- 지주이용 간판 : 근린생활시설은 분양 계약 조건사항인 경우는 현수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입간판 : 설치할 수 없다.
- 현수막 : 건물이 벽면 또는 게시시설에 이용하는 광고물로 게시시간은 10일이내로 한다. <단, 벽면부착시 벽면을 훼손하는 설치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 플랭카드 : 공공목적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단, 제9조[광고물등의 비용부담]은 예외로 한다.>

- 애드벌론 : 공공목적 이외에는 설치할 수 없다.
 - 벽보 : 제 9 조 (광고물 등의 비용부담)에 의거 벽보는 각종 게시판 안에 부착할 수 있으며 공고 통제일로 한다.
 - 전단 : 종이로 만든 광고로서 비닐코팅을 할 수 없고 차량, 사무실, 출입구등의 살포는 금한다.
2. 본 건물내에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규격은 별도 관리사무소의 협의에 의한다.
- 간판은 1개씩 이상 설치할 수 없다. 단, 제 10 조 (광고물의 수량제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간판 설치시 공용부분에 돌출되지 않도록 벽면 부착용으로 설치해야 한다.
 - 간판내부에 형광등을 부착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전자식 형 광등 안정기를 부착하여 사용해야 한다.
 - 간판재질은 검정 우레탄 앵글형으로 한다.

제 9 조 (광고물 등의 비용부담)

1. 광고 수입

-화장실 문화 캠페인에 따른 광고

가. 광 고 비 : 10일 기준 개당 ₩ 2,000원 (1개월 개당 ₩ 5,000원)

나. 광고유치 : 은행, 인터넷업체, 문구점, 여행사, 세미나 등

- 게시판 및 지정장소 부착광고

가. 광 고 비 : 10일 기준 A3 ₩50,000원 (1개월 ₩120,000원) A4 ₩40,000원 (1개월 ₩95,000원) 규격외 ₩60,000원 (1개월 ₩150,000원)

나. 광고유치 : 은행, 인터넷업체, 문구점, 여행사, 세미나 등

※ 당건물 입주자의 행사 등으로 게시하는 안내문은 2일에 한하여 무료로 한다

- 플랭카드

가. 광 고 비 : 10일 기준 ₩30,000원

나. 광고유치 : 입주자에 한함

- 판촉활동

가. 광 고 비 : 1일 기준 ₩50,000원

나. 광고유치 : 은행, 인터넷업체, 문구점, 여행사, 세미나 등

※ 당건물의 입주자는 광고비 30%의 D.C한다.(단, 프랑카드는 할인이 없다.)

※ 판촉활동은 겹치기 행사를 할 수가 없다.

2. 임대 수입

- 자판기 설치 임대 : 별도 견적에 의한다.

- 옥상등 공용부임대: 해당 층의 분양단가 및 면적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한다.

제10조 (광고물의 수량 제한)

1. 입주자 상호간판 : 하나의 간판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승인을 득한 후 2개까지 설치 할 수 있다.

2. 기타 광고물 : 관리사무소의 사전승인 된 수량으로 한다.

제11조 (광고물의 표시방법)

1. 광고물의 문자는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행 하여야 한다.

2. 광고물은 회사명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 할 수 있다.

3. 광고물은 본 규정 제 8조의 규격에 의하여 설치하되 미관 등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에서 설치한다.
4. 지면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 등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이동이 가능한 간판을 설치할 수 없다.
5. 제9조 (광고물등의 비용부담) 의 광고는 색상이 너무 화려하거나 미관을 해치는 광고는 게시하거나 광고 할 수가 없다.

제12조 (안전도 검사)

옥외광고물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은 반드시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벌 칙)

1. 광고물을 관리사무소의 승인 없이 게시한 경우에는 2일간의 자진 정비 기간을 통보한 다음 자진 정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철거 할 수 있다.
2. 관리사무소에서 강제 정리에 발생하는 파손 등의 책임 등은 광고물주의 책임으로 하고, 이 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해당 입주자의 익월관리비에 부과지 한다.

제14조 (적용상의 주의)

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입주자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 15 조 (기타)

1. 본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미관 및 광고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경우에는 철거, 철수를 요청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광고 및 임대는 제9조(광고물 등의 비용부담) 규정에 불구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게시하거나 공용부분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단, 공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3. 외부업체의 광고는 춘의테크노파크 입주자와 경쟁이 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광고를 게시 하거나 장소를 임대할 수가 없다.
4. 옥외광고 및 공용부 임대수입에 관련된 계약은 체결전 사전 입주자대표위원 회승인을 득하여야 한다.